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주기
(제27조의4제5항 관련)

1.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이하 "주기"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	정기검사 주기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우수	3년	3년
양호	2년	2년
보통	1년	1년
미흡	6개월	6개월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은 별표 7의2제4호가목에 따른 평가 등급을 말한다.